##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승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727

발의연월일: 2025. 1. 22.

발 의 자:조승래・박용갑・장종태

한준호 · 정을호 · 윤호중

강선우 • 이정문 • 민형배

박홍배 · 송기헌 · 홍기원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이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여의원직 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키도록 규정하고, 현행법에서는 공익 목적의 명예직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·위촉되도록 정한 직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겸직을 허용하고 있음.

이 경우 의원이 가지는 직이 현행법상 겸직이 허용되는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후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, 이미 직을 맡은 후 사후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직을 사직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라는 지적이 있음. 의원의 겸직 신고 이후 불가 결정이 내려져 의원이사직·휴직하거나 휴·폐업하는 경우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면서 국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.

이에 의원이 임기 중 다른 직을 겸하려면 먼저 의장에게 신고하고

경직 가능 여부가 결정된 이후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겸직 제도 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9조). 법률 제 호

##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3항 중 "가지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"을 "가지려는 경우에는 이를"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겸하려고 하는 직이 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기 전에 그 직을 겸할 수 없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겸직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)이 법 시행 전에 의원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직을 가진 경우의 신고에 대해서는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9조(겸직 금지) ①・② (생	제29조(겸직 금지) ①・② (현행		
략)	과 같음)		
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	③		
각 호의 직(제3호의 직은 제외			
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			
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			
시 후 1개월 이내에, 임기 중에			
제1항 각 호의 직을 <u>가지는 경</u>	가지려		
<u>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</u> 의장에	<u>는 경우에는 이를</u>		
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			
④ ~ ⑥ (생 략)	④ ~ ⑥ (현행과 같음)		
<u>&lt;신 설&gt;</u>	⑦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겸하		
	려고 하는 직이 제1항 각 호의		
	<u>직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기</u>		
	전에 그 직을 겸할 수 없다.		
<u>⑦・⑧</u> (생 략)	<u>⑧・⑨</u> (현행 제7항 및 제8항		
	과 같음)		